

기후환경본부 '20년 3/4분기 예비비 사용 보고

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55조의2(예산집행상황 등의 제출) 제2항에 따라,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을 보고드립니다

□ 3분기 예비비 승인내역 : 1건 5,777,146천원

○ 세부내역

(단위 : 천원)

예 산 과 목					예산현액	승인액		승인 후 예산현액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편성목	통계목		증	감	
일반예산 (예비비)	예비비	예비비	예비비 (801)	일반예비비 (01)	-	-	5,777,146	-
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	신재생 에너지보급	구리석유 비축기지 관련소송 판결금 등	배상금등 (305)	배상금 등 (01)	-	5,777,146	-	5,777,146

○ 예비비 사용 사유 및 근거

① 市 공유재산인 구리석유비축기지 대부료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1심 패소에 따른 판결금 및 이자 지급(녹색에너지과)

- 판결주문에 따르면, 전액 지급될 때까지 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에서 정한 연12%의 이자가 발생하므로, 이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예비비로 지급

소송개요 및 진행경위

- 사 건 명 :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
- 당 사 자 : (원고)한국석유공사 (피고)서울특별시
- 청구취지 : 구리석유비축기지 기지급한 대부료 금액(이자 포함) 반환 청구
- 소송경위
 - '19. 6월 : 한국석유공사, 소송 제기 ('20.1~6월 : 3차례 변론기일 진행)
 - '20.7.24. :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선고
 - 현재 항소 진행중